

「동아리 규정」 신규조문대비표

2006. 2. 28. 제정 판 (시행 2006. 3. 1.) → 2016. 2. 29. 개정 판 (시행 2016. 3. 1.)

바뀜 4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202/compare?from=498&to=499>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4:02:03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4조(등록절차) 동아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소정양식)를 각 2부씩 첨부하여 매년 4월 10일까지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아리연합회는 학생처로 각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도교수직 승인서 2. 동아리등록 신청서 3. 조직표 4. 연중활동 계획서 5. 연혁 및 실적 6. 회원 명단 7. 입회원서 8. 동아리 회칙	제4조(등록절차) 동아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소정양식)를 각 2부씩 첨부하여 매년 4월 10일까지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아리연합회는 <u>학생지원처</u> 로 각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u>〈개정 2016-02-29〉</u> 1. 지도교수직 승인서 2. 동아리등록 신청서 3. 조직표 4. 연중활동 계획서 5. 연혁 및 실적 6. 회원 명단 7. 입회원서 8. 동아리 회칙
제8조(지도교수) ①지도교수는 본 교 전임교수 중에서 동아리의 추대를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②등록 시 지도교수가 없어도 일단 등록을 인정하며,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처에서 알선할 수 도 있다. ③지도교수는 소속동아리의 활동 및 행사를 지도한다.	제8조(지도교수) ①지도교수는 본 교 전임교수 중에서 동아리의 추대를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②등록 시 지도교수가 없어도 일단 등록을 인정하며, 필요한 경우 <u>학생지원처</u> 에서 알선할 수 도 있다. <u>〈개정 2016-02-29〉</u> ③지도교수는 소속동아리의 활동 및 행사를 지도한다.
제9조(임원선출 및 임기) ①동아리 임원은 소속동아리의 회칙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②선출된 명단 또는 임원개선 및 회칙을 변경하였을 경우 7일 이내에 선출된 명단과 함께 지체없이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한다. ③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임원선출 및 임기) ①동아리 임원은 소속동아리의 회칙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②선출된 명단 또는 임원개선 및 회칙을 변경하였을 경우 7일 이내에 선출된 명단과 함께 지체 <u>없이</u> <u>학생지원처</u> 에게 제출한다. <u>〈개정 2016-02-29〉</u> ③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재정) ①동아리 운영상의 재정은 회원의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학생복지 처를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학생회에서 일정액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매 학기마다 영수증을 첨부한 결산서를 학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 ①동아리 운영상의 재정은 회원의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고자 할 때는 사전에 <u>학생지원</u> <u>처</u> 를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u>〈개정</u> <u>2016-02-29〉</u> ②학생회에서 일정액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매 학기마다 영수증을 첨부한 결산서를 학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동아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학생처로"를 "학생지원처로"로 하고, "한다."를 "한다.〈개정 2016-02-29〉"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학생복지처"를 각각 "학생지원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있다."를 "있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체없이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한다."를 "지체 없이 학생지원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언어야 한다"를 "언어야 한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